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연속토론회 5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일시 | 2015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 일시 : 4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순서

■ 인사말

■ 토론회

□ 사회

김 민 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발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의미(이 창 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

김 수 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이 시 균(한국고용정보원 박사)

이 동 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장 경 화(홈플러스노동조합 동수원지부 사무장)

구 교 현(알바노조 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배경과 해설, 최저임금투쟁의 의미

이 창 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1. 들어가며

- 지난 4. 9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2016년 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요청서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예년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등의 표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부의 의중을 다소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제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대략 7% 중후반대의 인상을 통해 시급 6천원대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급 6천원대가 과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결정기준 검토,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안 개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의 의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2. 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턱 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

–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6,220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월 1,506,179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월 1,664,787원)에도 한참이나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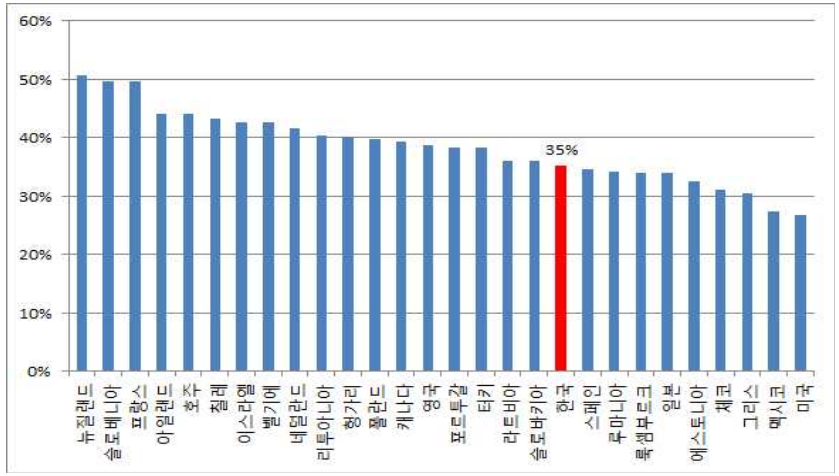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월 환산액 1,088,890원)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하다.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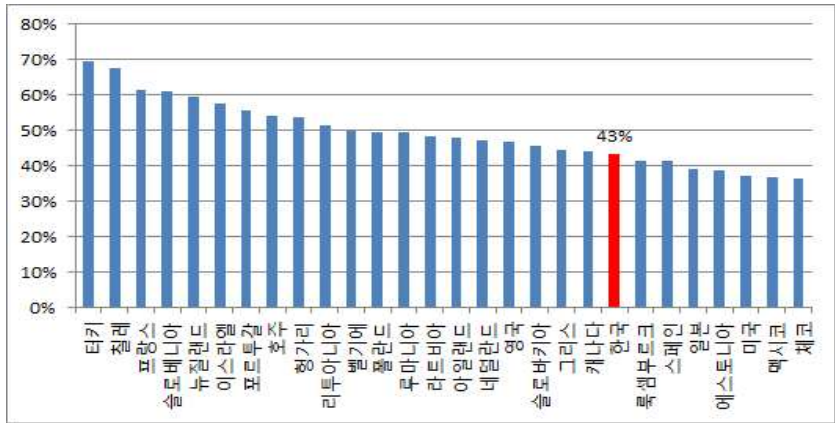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795,053	38.6	29.9
2010	10.1-10.12	4,110	858,990	2,264,460	2,931,244	37.9	29.3
2011	11.1-11.12	4,320	902,880	2,341,027	3,018,720	38.6	29.9
2012	12.1-12.12	4,580	957,220	2,469,814	3,178,160	38.8	30.1
2013	13.1-13.12	4,860	1,015,740	2,577,842	3,298,667	39.4	30.8
2014	14.1-14.12	5,210	1,088,890	2,648,334	3,333,475	41.1	32.7

– 또한 2013년 현재, 한국은 전일제 노동자 임금 평균값(mean)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 중위값 기준으로는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이다. 여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등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지만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3년 OECD 비교



<그림>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3년 OECD 비교



2)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 위원이 동수인 상황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공익위원은 정부가 배타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구조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공익위원들은 합리적 기준이나 인상 방안에 대한 제시 없이 노사 양측의 인상률을 절충해 인상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3) 그마저 지켜지지도 않은 최저임금: 솜방망이 처벌

-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노동자는 227만 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2.1%에 달한다. 8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미흡과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다수 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도 약 60%에 육박한다. 사용자들에게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현실에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3.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결정기준 검토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여기서 '생활안정 도모'는 해당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와 그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권고이기도 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증가와 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의 제한을 우려하고, ①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사회권규약 제7조 제(a)항 제(ii)호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 ③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④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 노력할 것, ⑤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김인재, 2012. 노동법연구)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ILO 최저임금결정협약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 이런 점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최저임금은 단신 노동자 생계비만 주요하게 고려하면 된다'는 주장은 국제기구 권고와 현장 실태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최저임금의 110%미만)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세대원 수가 약 2.5명에 이른다. (오상봉, 2014) 단독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2.5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하지만 이러한 결정기준이 실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제23조) '노동자 생계비'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주요하게 산정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만의 생계비'가 아니라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여야 한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제시된 실태생계비를 상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실태생계비의 일정 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거나 그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어떤 직접적 연관성을 가졌던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가 실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사 근로자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노동자 '평균 임금'을 '평균값(mean)'으로 하느냐, '중위값(median)'으로 하느냐 ▽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로 하느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으로 하느냐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평균값'과 '중위값'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한 경우 '중위임금의 50%'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어 '저임금 노동 일소'라는 최저임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비교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이 적절하다.

-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성장 등에 따른 과실을 공정

하게 배분하여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소득분배조정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지만, 소득분배조정분이 2%대의 미미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실제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경제학적 법칙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안하여,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

1) 요구 배경

- 명목임금·실질임금·협약임금 등 모든 임금통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 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을 상회한 경우는 2012년 한 해뿐이며, 1인 이상 임금노동자와 피용자 1인당 보수[1]의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노동자 실질임금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제성장과 물가수준에 조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나아가'임금 없는 성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 임금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피용자 보수 총액을 통계청 전체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

<표5> 최근 10년 간 경제지표와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단위 : %, %포인트)

연도	경제지표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1)	물가 상승률(2)	(1)+(2)	5인 이상 상용직(A)	임금노동자 1인 이상(B)	피용자 1인당 보수(C)	A[1]	B[2]	C[3]
2005	4.0	2.8	6.8	6.6	3.3	5.8	−0.2	−3.5	−1.0
2006	5.2	2.2	7.4	5.7	4.0	3.7	−1.7	−3.4	−3.7
2007	5.1	2.5	7.6	5.6	5.4	4.6	−2.0	−2.2	−3.0
2008	2.3	4.7	7.0	4.4	5.8	3.9	−2.6	−1.2	−3.1
2009	0.3	2.8	3.1	2.2	0.3	2.1	−0.9	−2.8	−1.0
2010	6.2	3.0	9.2	6.4	5.2	3.8	−2.8	−4.0	−5.4
2011	3.6	4.0	7.6	−0.9	4.3	3.7	−8.5	−3.3	−3.9
2012	2.0	2.2	4.2	5.3	3.5	3.2	1.1	−0.7	−1.0
2013	2.8	1.3	4.1	3.8	3.7	1.4	−0.3	−0.5	−2.7
2014	3.3	1.3	4.6	1.1	2.3	−	−3.5	−2.3	−
2005-2014	3.5	2.7	6.2	4.0	3.8	3.6	−2.2	−2.4	−2.8
2008-2014	2.9	2.8	5.7	3.2	3.6	3.0	−2.5	−2.1	−2.9

1) A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5인 이상 상용직 월 임금총액
2) B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3) C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보수총액을 통계청 조사 임금노동자 수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

- 임금상승이 정체되면서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IMF 경제·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2013년 현재 피용자 1인당 보수는 1.2%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14.3%포인트나 하락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정체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도 악화시켰다. 1990년대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 기업소득 비중은 약 15%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 가계소득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어 2012년 62.3%까지 낮아졌다. 가계소득 증가율도 1990년대 평균 11.8%에서 2000년대 평균 5.7%로 크게 하락하였다.

-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급증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이나 증가했다. 재벌들의 실질 민간 설비투자는 2011년 4.4%, 2012년 −0.3%, 2013년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 상위 10%가 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 한국이 1994년 OECD 가입하여 국가통계가 공식화될 당시 30%를 하회하던 상위 10%의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요 산업국가의 상위 10% 소득비율에서 한국은 미국의 48.16% 다음으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임채원, 2015).

-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9.5배에 달할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포인트씩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불평등 심화로 지난 25년 동안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이 8.5% 포인트 손해 본 것으로 밝혀졌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란 사실이 명백해졌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지름길은 소득불평등 해소임을 역설했다.

- 201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소득이 시간당 6,823원(중위임금 시간당 10,234원의 2/3인)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878만 명 가운데 453만 명(24.1%)에 달한다. 정규직은 63만 명(6.2%), 비정규직은 389만 명(45.7%)이 저임금 계층이다(김유선, 2014).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1%인데, 이는 OECD 산술평균값(16.3%)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25.3%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 '임금 없는 성장', 소득불평등 악화,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유지하거나 수출을 늘려서 국내의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전략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병희, 2015)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경제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절대적·상대적 수준 유지가 기존의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이다. 현재 관성대로 7%대의 인상은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즉,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각각 7.2%, 7.1%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실제 경제·사회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

2) 산정방식

-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요구이다. 동시에 이 요구액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계비를 감안해도 적정 수준이다.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은 '생계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지양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세대(family)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 생계비와 요구안을 산정함.

①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통계청, 2014) 가운데,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출을 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수도·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문화 등

②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2.5인), ①에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최저임금노동자의 평균 가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출규모를 산출함

③ 최저임금이 내년(2016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경제성장률(3.4%), 물가상승률(1.9%), 소득분배 개선치(2.9%)를 반영함.

즉,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소비지출(가계지출-비소비지출) * 2.5인 가구 적용(가구균등화지수)]*2015년 물가상승률 등 반영.
→ (1,221,200*1.581)+ (1,221,200*1.581*8.2%) = 2,089,035원 / 209시간 = 시급 9,995원 (원 단위 절상), 10,000원.

[표]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주요 통계 비교 (단위 : 원, %)

	금액(A)	금액(A) 대비 2015년 최저임금 비중(%)
최임 노동자의 평균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비지출 기준	2,089,035(시간당 9,995)	55.8
최임 노동자의 평균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계지출 기준	2,632,279(시간당 12,594)	44.3
2015년 시중노임단가 월환산금액	1,675,971(시간당 8,019)	69.6
2015년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276,742(시간당 10,894)	51.2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2] * 8.2%	1,650,871(시간당 7,899)	70.6
2015년 최저임금	1,166,220(시간당 5,580)	100.0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은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한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를 충족시키는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1,650,871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7,899원이라는 점 ▽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8,019원이라는 점 ▽ 노동자 1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 10,894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를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게 만들고 있는 재벌·기업과 노동자·서민 간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를 혁파할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 ▽ 경제·사회적 효과(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 등)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점 ▽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조응한다는 점 ▽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 최저임금

2) 2013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1,506,179원) + {[2013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1,506,179원) * 2014년 물가상승률(1.3%)} = 1,525,759원

1만원은 저임금을 일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당 10,000원, 월 2,090,000원을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다.

5.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이 갖는 본질적 의미

-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에만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임금의 본질, 즉 '생계임금'이란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즉,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정생계를 보장하는 적정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사회적 표준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역생활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 일반에 적용되는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 임금은 기업의 경영상태 혹은 생산성에 종속된 변수로 전락하게 된다.

-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전체 노동자 임금 일반의 공통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투쟁일뿐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 조직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와 계급 내부 임금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이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 하락과 협상력 약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투쟁은 노동조합 전반의 재활성화(revilatisation)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조직노동의 계급대표성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조직률이 11~1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정)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대다수 미조직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상향조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이자 투쟁이다.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조직노동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 토론

최저임금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토론문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최저임금이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함.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는 주장임.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그 기저가 되어야 할 것임

○ 생계 유지란 측면에서 노동자 개인이 아닌 그 노동자가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 실업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고전학파의 임금기금설 또는 경쟁시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기반으로 함
- 고전학파 경제학에서의 임금기금설은 기업이 고용에 투자할 예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등이 주장하는 임금의 인상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임금만 상승시킬 뿐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못 미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감소시키고, 고용은 축소시킨다는 이론임
-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 상승과 마찬가지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발생시킬 것임
- 또한 경쟁시장이론에 기반한 경제학 모형에서도 최저임금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임금 이상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기 때문에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있음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임금 이상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될 경우 임금은 인상되지만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 그러나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상승이 고용감소나 실업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 임금기금설은 고전학파 내에서도 당시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중 많은 이들은 임금이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음

○ 또한 경쟁시장이론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도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 = 노동자 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감소나 실업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임

- 경쟁시장이론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의 균형은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임금=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 수준에서 결정될 때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만큼 주어지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가 가격수용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경쟁시장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이윤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 감소와 실업 상승이라는 결과가 아닌 기업(또는 사용자)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하지만 이윤 수준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일치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임금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의 역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일자리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 역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Neumark 역시 마찬가지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 역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많은 실증분석들도 있음.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경쟁시장이론을 따르더라도 거래의 단위가 노동자가 아닌 노동시간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임
- 고용인이 많지 않은 자영업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노동자 두 명을 30시간 씩 총 60시간 고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노동시간 감소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재계는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가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하지 못한 결과나 너무 높은 수준의 프랜차이즈 차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시켜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최근의 ILO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금주도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임금을 상승시켜 투자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함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기업주보다는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상승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소비의 확대는 다시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임금주도 성장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더욱 큰 소비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것임. 이런 소비확대는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비의 증가는 고용도 할 수 없는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되기도 하는 독립영세자영업자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물론 임금주도 성장론이 언제나, 모든 국가들에서 옳은 정책은 아닐 수 있음. 임금주도가 아닌 이윤주도 성장도 가능함. 이윤주도 성장이론은 기업의 투자가 노동자의 소득,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임. 하지만 Onaran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주도 성장국가로 분류됨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 내 불평등 나아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정책으로서의 중요성도 가짐.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토론

최저임금 토론문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는가?
- 법정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수가 제기
- 특히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음(OECD 1998)
- 그러나 실증적 증거는 혼란스럽게 나오며, 국내연구에서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증대효과 제기
- 최저임금상승이 빈일자리를 채우는 효과가 임금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보다 큰 경우에 고용증대효과 발생

2. 최저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

○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임금상승효과 및 파급효과를 발생하여 임금불평등을 완화(OECD 1998)
- 성별 및 연령간 임금격차 축소 경향 확인,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음.
- 단, 고용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 임금불평등 완화효과는 상쇄

3. 최저임금 빈곤완화 효과

○ 노동자 가구의 빈곤 축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
- 그러나 전체 빈곤완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 1) 부정적 고용효과 발생 가능성. 2) 최저임금상승은 빈곤층에 무관(일하지 않거나 주소득원이 아닌 경우가 다수)

– 근로빈곤층 확산, 최하위 근로소득계측에서 최저임금층이 상당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저임금은 빈곤완화에 기여

4. 최저임금상승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 소득분배구조의 개선효과는 고용효과에 따라 그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내수진작 효과도 불확실하게 판단될 수 있음.
– 그러나 고용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뚜렷하면 내수진작효과가 긍정적일 것임.

○ 공동체 수준은 평균 및 최하층에 대한 보호정책 수준에 의해 판단
– 내수진작을 위한 전체 대상에 대한 소득분배정책은 실패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저출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험 증대는 보수적 정부하에서도 내수진작 정책 필요성 대두
– 경제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소득분배 개선 정책에 근본적 한계

5. 최저임금정책과 연계된 사회 및 고용안전망 정책의 효과는?

– 빈곤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정책으로 한계;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하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문제 발생
– 실업급여 지급수준과의 연계 효과; 상한선과 하한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고정지급 수준임.

6. 최저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생계비 보장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비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며, 노동소득분배율도 낮은 편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상승 필요성은 명료
– 그러나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주변부의 존재로 인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성도 상존(경영계의 반발 논리이기도 함.)

7. 추가적인 논의 사항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
○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의 결정 필요?

■ 토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경제민주화 연대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 소득구조의 격차 해소,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한 소비여력 창출,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으로 생산성향상등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동감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및 가계소득 정책에 대해서 시장 및 사회 진영의 논리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할수록 갈등만 커짐

> 재계의 표리부동 - 한겨레 신문 (3월 23일)
> 한경연은 '소비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한 고용구조 분석'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가 크게 부진하고, 특히 40대 자영업자가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40대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소득(2010년 기준 실질소득)은 2001년 2877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5만원으로 10여년 만에 5% 줄었다. 같은 기간 40대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4170만원에서 5170만원으로 24% 늘어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 40대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001년 임금근로자의 69% 수준이었으나 2013년 53%로 낮아졌다. 자영업자 소비도 비슷한 추세다. 40대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소비는 같은 기간에 2826만원에서 1997만원으로 29% 줄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소비는 2730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비는 임금근로자에 견줘 104%였으나 63%로 급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소득 및 생계보존을 위한 시장정책이 필요함

❑ 중소상인들의 현실

○ 지난 14년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800명을 조사한 결과 창업 후 폐업까지 걸린 기간과 관련해서 최초 창업의 경우 2~3년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년 20.2%의 비율로 나타나 **5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57.2%**인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48.3%가 권리금 회수 없이 폐업한다는 의견과 폐업이후 71.4%가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됨 또한, 폐업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 가계 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게 조사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 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각15.2%,15.1%로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비율이 각70.7%, 60.1%로 조사되어 고용ㆍ산재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58.4%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대답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가격통제력) 심화

- 12년 대한상의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91% , 온라인,홈쇼핑등 무점포 판매 96%
- 대형마트, SSM, 편의점에 이어 도매업진출(상품공급)과 전국 20여곳의 복합쇼핑몰 출점 등 확산 추세
- 대기업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광고홍보비 전가등 불공정한 갑을계약 지속적으로 논란

❑ 중소상인들의 요구

-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저매출 자영업자들에 한해서라도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
-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 확대 - 임의가입형의 고용보험제도를 개

선(사업자등록이후 6개월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허용설정기간과 3개월 연속미납시 자동 피보험자 자격상실등 개선필요)하는 것과 폐업 시 일정기간 생계가능한 사회부조제도(외국사례등) 도입이 필요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폐업수당(구직촉진수당) 같은 자영업자 공공부조 도입과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요구 및 근로자의 고용확대 촉진을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15년 근로장려세 자영업 확대 시행예정) 소상공인연합회등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를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정하기 위한 “최저가격” 산정 및 공동 행위를 법률로서 제정 요구 함

❑ 실질적 소득보존을 위한 공정한 시장 경제 규제 정책이 우선 필요함

- 그런데 실질적인 최저임금인상과 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 및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 바로 재벌유통업체 위주의 시장지배력 집중을 해소 하는 것이다.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것. 대형마트와 SSM(재벌수퍼마켓) 진출에 이어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진출등을 규제하는 유통법/상생법개정등 목표강제와 밀어내기등 남양유업같은 불공정한 대리점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대리점 보호법 같은 공정한 시장 보호 제도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제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물론 공정한 경제민주화 과제 실행과 최저임금 보장 시행이라는 것이 선후차가 있는 과제는 아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집중화가 가져오는 소득양극화 및 서민경제의 파탄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과제로서 서로 연대하고 지원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즉 현재 재벌중심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싸움을 위해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대에 기초한 추진력이 필요함.

■ **토론**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 희망의 크기가 커지겠지요.

장경화 홈플러스노동조합동수원지부 사무장

○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직 일을 시작한 건 2008년 대형마트 의류 협력업체 직원으로 옷 판매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 당시 첫 월급이 83만원 정도로 기억된다.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나고 기회가 생겨 의류매장 매니저를 하게 되었다.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다보니 적게는 17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 2009년엔 월평균 200만원 급여로 살았답니다.

큰 딸	기숙사+차비+용돈+급식비	600,000(지방 애니고당시)
작은 딸	학원(수학+예체능)	400,000
부채	방 보증금 200	메니저 보증금 500
	월세	300,000
	가계식대	300,000
	세금(도시+수도+전기)	100,000 (겨울 +10만원)
	핸드폰요금	100,000 (두딸요금 포함 세명 비용)
	기타 세금	100,000
	교통비	**50,000원**
	고정 지출	1,950,000원

<2009년 8월~ 평균 월급이 220만원 당시 지출비용>

* 당시 큰 딸 중2학년, 작은 딸 초등4학년 양육비용 포함

- 고정 지출에서도 알수 있듯이 유동성 있는 비용인 의류, 문화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지출 총액이 대략 2백만원입니다.
  또한 교육비와 월세 부담으로 보험과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사실 월수입 200만원.. 액수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연차, 상여금도 없고 한달에 6번 휴무에, 행사 바꾸는 날은 새벽 2시 까지 마무리 작업으로 너무 오래 서서 일하다보니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에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 당시 메니저 첫달에 7킬로그램이 빠졌을 정도니까요.

- 월급이 일정치 않아 적금은 불가능 했지만 그런대로 운영은 되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고용조건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간 의류매장 매니저로 일하던 중 마트에서 협력직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 직영으로 전환되면 수입이 반토막 나게 되니,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도 능숙해지고 적성에도 맞는거 같은데, 다른일을 구하는 것도 자신도 없고 어쩌나. 그래도 한달에 9번 쉬고 연차도 생기면 다리도 덜 아프겠지.. 하는 생각과 나중에 정 어려우면 투잡을 하게되라도 일단 어쩔 수 없으니..)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직영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점포에서 그러더라구요. “여사님,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연봉 1500까지는 나와요”

- 2011년 9월부터 월평균 110만원 급여로 살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되고 초반에 받은 월급은 900,000만원 정도. 였으며, 현재 월급이 소폭 올라 110만원 정도입니다.

-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반토막 난 수입에 앞이 막막하던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정 혜택으로 주택공사 (전세임대)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상가주택 15평 전세금을 주택공사가 내주고 저는 108,000원 이자만 내니 월세내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메니저 시절 남아있던 잔고를 써가며 지탱하다가 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큰딸은 사춘기 무렵 아빠가 채권자에게 시달리는걸 겪다보니 대출, 빚은 절대 싫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첫 등록금은 엄마가 내주겠다 했지만 어차피 학자금 대출없이 4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취업을 선택했고 3D 기술로 운좋게 취업하고 소원대로 독립해서 전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작은 딸과 둘이 가계

를 꾸리고 있습니다.

세금(가스+수도+전기)	100,000(겨울 +10만원)
이자	108,000
핸드폰요금	80,000(2명)
식비	220,000
교통비	60,000
병원 건강	80,000
학비&용돈	300,000
보험	125,000원
사교육비	없음
고정지출	**1,073,000원**

<2013년 4월~ 현재> 고등학생이 된 작은 딸과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 98년 IMF거치면서 운영하던 가게문을 닫고 급격히 어려워졌고 두 딸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08년 반지하방에 살 때 장마철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밤 12시 마감근무를 끝내고 두 딸아이, 내일 학교갈 준비를 챙겨서 찜질방에 가서 잤던 일은 언제까지도 잊지 못할겁니다. 그런데도 빚만 없으면 된다고, 엄마가 같이 있으니 좋다고 했던 딸들이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당연히 지금 수입으로는 기본 지출만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당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 급여 외에 월평균 300,000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 받은 돈으로 저 역시 적은 돈이지만 기부도 하고 저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조받는 30만원이 없었으면 꿈도 못꿀 일이었지요.

○ 최저임금 당사자가 되면서 변한 것들… 남들에겐 소소한 기쁨이 꿈이 되어 버렸네요.

- 최저임금 월급으로 반토막 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해 생협에서 유기농, 무농약 야채를 먹던 것을 지금은 제일 싼 라면 식빵, 계란으로 먹는다는거죠.

저 역시 고된 노동을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다 보니 아이 먹거리를 잘 챙겨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작은 딸은 수업후 학교 관악부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7시. 집에서 라면과 식빵이 주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작은 딸의 아토피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 그리고 저 생각해보니 제 취향 , 취미 라는게 없어졌습니다.. 마트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맘에 드는 옷을 진열하면서도 3만원대의 옷은 살 생각을 못합니다. 시즌이 끝날 때 가격이 가장 떨어졌을 때 남아 있는 옷중에 필요한 옷을 고르는 것 정도지요. 저와 제 딸에게는 5900원~9900원이 적당한 옷값입니다..
  영화보는 거, 책 사는게 아까우면 안되는 건데... 꼭 사고 싶은 책도 못사게 되었습니다.

- 어떤 날은 해물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4만원씩 하는 가격에 먹기를 포기하게 되고, 몸살이라도 걸린 날, 밤 12시 퇴근하고 하필 주머니에 돈이 없어 다리를 질질 끌면서 30분 정도를 걸을때... 택시비 4000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바보처럼 걷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쿠팡에서 나온 2~3만원짜리.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는 1년에 한번 아이 방학때 같이 가는 국립휴양림 1박에 45,000원짜리. 지금은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사치의 전부입니다.

- 요즘처럼 돈만 있다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해 아이가 더 큰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건 아닌지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 희망의 크기가 커지겠지요.
–전 집을 장만하고 싶다던가 하는 큰 꿈은 없습니다.

- 아이에게 돈 걱정없이 좋은 재료로 장을 봐서 멋진 밥상을 차려 주고 싶네요.
  남들처럼 그럴싸한 밥상을 못차려주고 두 딸들은 우유와 씨리얼로, 빵과 라면, 싸구려 김밥으로 집밥을 대체하곤 했거든요. 솔직히 굶기지만 말자고 다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나 연극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TV에서만 보던 여행지에 한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어쩜 해외여행이 가능 할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빈집에서 혼자 핸드폰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는 작은 딸과 여유가 되면 좋은 공연도 감상하고 티브이에서만 보며 부러워하던 곳으로 여행이 가고 싶어요

- 하지만 그건 희망이고 내년이면 전세임대 재계약 해야 하는데 혹시나 자격조건에서 탈락되면 더 작은 집에서 더 많은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급여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고, 식당 설거지 알바를 찾아야 할 겁니다. 통장에서 세금 빠져나가고 고교 학비,급식비가 빠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 제발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 앞서 말한 걱정은 없을테고 오히려 적금하나 더 들고, 또 그만큼 저와 제 딸아이 희망의 크기가 더욱 커지겠지요.
  저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5580원 시대, 위태로운 가정의 가장들과 그의 아들,딸들이 한 단계 더 행복해질 터전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토론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 왜 최저임금1만원인가?

○ 100만을 훌쩍 넘긴 알바노동자 수.

-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알바는 60만7142명, 알바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20만5383명,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알바는 20만115명으로 집계됨. 매년 2~3만 가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 (통계청). 그러나 4대 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않는 알바의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알바노동자들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한시적 시간제 종사자 중 서비스판매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300만명 규모 (통계청)
- 최저임금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임

○ 알바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청년들의 경제사정은 추락하고 있다.

- 독립해서 살아가는 대학생의 생계비를 추정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산정해도 140만원을 넘는 수준. 최저임금 받으며 한달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돈.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알바시간이 35시간에 달하는 상황)

항목	비용	근거
집세	50만원	대통령직속청년위가 2014년 9~12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입자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만원, 월세는 42만원, 월 관리비는 5만 7710원으로 나타남
등록금	55만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종합대 등록금 666만원.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 55만원을 부담하는 꼴
식비+교통+통신비	38만원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서울도시연구, 2013)
합계	**143만원**	
	+	생필품을 사거나
	+	친구를 만나거나
	+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	.....

- 2011 ~ 2013년까지 동안 학자금 대출액이 2,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기연체자가 4배나 늘어남 (김상민 의원실)
- 대졸자 중 생활비·학비 마련 목적으로 휴학 경험이 있는 청년이 17만3000명.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임 (통계청)
-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558만 2,000원. 2010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무려 66.4%나 됨. 이는 30대(31.5%)의 배가 넘는 증가율임. (통계청) 대학졸업자 5명 중 3명이 빚을 가지고 있음 (잡코리아)
- 2~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침. 결국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 (통계청)

○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 2004~2014년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명에서 203만명(전체의 10.8%)으로 96만명 증가함.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25.5%에서 2014년 22.9%로 오히려 떨어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알바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다.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지역의 77만건 구인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실제 많은 사업자들이 공고된 시급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공고 시 각종 수당을 더해 시급을 부풀려 기재하고 있음.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서울보다 시급이 낮음. 따라서 실제 알바노동자의 시급은 본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알바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임. 최저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 위조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비율이 높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시급이 여타 업종의 시급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대기업이 동네가게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 알바노동자의 소득은 최저임금이 100% 결정한다.

- 알바노동자들에게 있어 임금 외 소득은 사실상 없음
- 그나마 보편적 성격을 가진 실업급여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아르바이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율 30% 미만 수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치 않아 근로사실 증명이 어려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자 발생 시 관리자의 인사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관리자들은 알바노동자 퇴사 시 설득/회유를 통해 자발적 퇴사자로 만들어 버림. 이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올라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 알바를 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낮은 시급을 벌충하기 위해 몸을 쓰는 피곤한 일을 하거나 쉴 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일을 하고 있음. 결국 알바 이외에 다른 일, 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임. (실제 장시간 알바가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 이러한 상황이 굳어질수록 NEET족이 늘어나게 될 것임.
- 따라서 시급인상은 청년 알바노동자들에게 단순한 임금인상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낮은 최저임금은 여타 사회적 문제를 초래.

-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투잡 경험, 6명 정도는 6시간 이상 근무. 직종은 서빙·주방·매장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알바천국, 2014). 한편 심야 알바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45시간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은 주간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 위한 것 (알바연대, 2013). OECD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높은 노동시간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것
-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 강도나 업무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결과. 이는 해당 직종의 생산성 저하와 불안정성 고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한편 쉽게 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는 인식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각종 불법·부당대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킴

■ 어떤 요구가 필요한가?

⇨ 최저임금 논의 틀을 바꿔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소속 기관임. 그러나 최저임금이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보건대, 이를 노동부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전 부처를 망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 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함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금융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 현실적 납품단가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각 대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
- 또한 최저임금은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으로 책정 되어야 할 것임. 이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논의 틀이 만들어 진다면 최저임금 논의는 그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최저임금 인상,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담아야 한다.

-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소득불평등, 어마어마한 실업률과 자영업자 수 등 산적한 사회경제문제를 풀어가는데 최저임금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
-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단순히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갈 것인가 하는 지향이 담겨야 할 것임
-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노동시간이 줄어야 비로소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여유도 생길 수 있음. 길게보면 생산을 단축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과 환경에 대한 착취를 낮춰갈 수 있을 것.

○ 어떻게 운동을 펼칠 것인가

- 최저임금 운동이 사회적 힘을 가지려면 새로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배인상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 과정이 미국사회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주도. 현재는 패스트푸드 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판매점 종업원, 영유아 보육 종사자, 돌봄노동자, 대학 강사, 가사노동자, 공항 시급 노동자들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알바노조는 미국과 같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 중. 현재 패스트푸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1개 매장에 평균 50명 정도가 근무, 주요브랜드 4사의 매장 수가 2천여개에 달함) 2개 브랜드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대기업이 2개 브랜드 (KFC, 버거킹)은 각각 유럽계/한국계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지불능력을 소유하고 있음. 더불어 패스트푸드는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영업해오며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인 상황.
- 최저임금 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집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 이러한 운동을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 더불어 민주노총에서 오는 6월 장그래 대행진과 같은 사업이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